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보험 소개

02

Special Theme

글 황경용
마쉬코리아 부장



1. 머리말

2014년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인천광역시 일원에서 제17회 아시안게임이 개최된다. 이어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2016년에는 Rotary International 서울국제대회,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 스포츠 및 이벤트 행사가 대한민국 각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이러한 대규모 국제적 스포츠 및 이벤트 행사는 개막식 전 단계, 행사 중, 행사 후의 전 기간에 걸쳐 매우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위험관리 방안으로는 위험의 보유, 위험의 전가 및 위험의 제어 등의 여러 방법이 있다. 본고에서는 위험을 인식, 파악하고 분석하여 위험의 보유, 전가 또는 제어하는 위험의 관리수단 중에서 위험의 전가에 해당하는 보험, 즉 대형 스포츠 및 이벤트 행사와 관련한 보험에 대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2. 본론

2014년 9월에 치러지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45개국에서 선수 및 임원 13,000여명, 방송보도요원 7,000여명, 운영요원 30,0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스포츠행사로써 동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가. 배상책임보험
- 나. 상해보험
- 다. 행사취소보험
- 라. 재물보험(테러담보 포함)
- 마. 건설공사보험
- 바. 범죄보험

- 사. 납치보험
- 아. 임원배상책임보험
- 자. 기타(자동차보험 등)



보다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배상책임보험(Third Parties Liability)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IAGOC)는 대회의 개최 및 진행과 관련하여 행사기간 전 단계부터 행사 폐막 이후까지 다양한 배상책임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참가 선수단과 임원, 방송신문기자단, 자원봉사자, 관객, 스폰서, 보안요원 등으로부터 동 대회와 관련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제기 당하여 OCA와 IAGOC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 제3자배상책임보험이다. 보상하는 손해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경감비용, 방어비용, 권리보전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배상책임증권을 설계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고의 빈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배상책임손해가 비교적 작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되나 제대로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의 빈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대재해위험

매스미디어의 관심으로 인하여 동 대회가 테러리스트와 같은 집단의 주 표적이 될 수 있다.

(3) 역할의 다양성

조직위원회는 각 선수단뿐만 아니라 여행사, 운송관련 발송업자, 케이터링회사, 호텔업자, TV신호송출업자, 비디오편집업자, 쇼 운영자, 메디컬 담당자 등 다양한 당사자들에 대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4) 조직위원회의 제한적 존속

조직위원회는 폐막식 이후 일반적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청산되므로 대부분의 클레임은 조직위원회 해산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 배상책임의 경우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배상책임증권은 (가) 포괄적으로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전위험담보(All Risks Coverage)여야 하며, (나) 조직위원회의 업무상 부당행위를 담보하는 전문인배상책임(Professional Liability)과 엠블렘, 휘장 등이 사용된 생산물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 (Products Liability)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 증권기간은 조직위원회가 청산되는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최소한 2년 정도의 클레임 통지기간 연장담보기간을 두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라) 보상한도액은 대회의 규모와 참석인원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마)담보지역은 전세계(Worldwide)로 할 것이 권장된다.

참고로 IOC가 주최하는 국제올림픽경기대회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제3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보상한도액은 배상청구기준증권(Claims Made Basis)의 경우 최소 US\$250,000,000이고, 손해사고기준증권(Occurrence Basis)의 경우 최소 US\$100,000,000이다.

나. 상해보험(Protection of Per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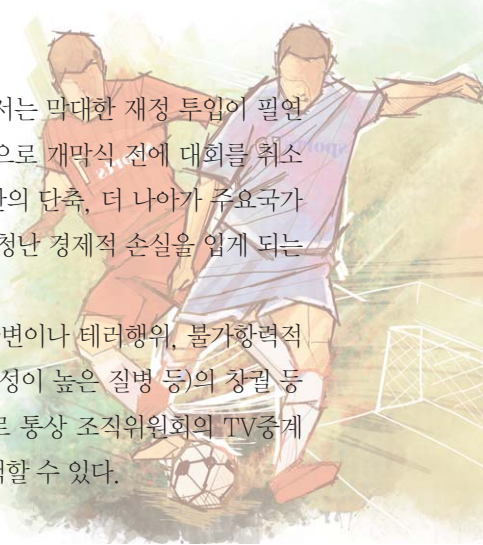
아시아경기대회와 같은 대규모의 국제적 행사에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석을 하게 됨에 따라 이들이 행사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를 담보하는 상해보험의 가입이 필수적이다.

상해보험은 사망·후유장해,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 발생하는 치료비용 및 입원비용, 간병비 및 본국 후송비용 기타 응급처치비용을 담보해야 한다. 담보대상은 공식 선수단 및 임원, OCA 임원 및 가족, OCA 및 조직위원회에서 초청한 국내외 귀빈, 공식 후원사, 자원봉사자, 방송 및 미디어 관계자 그리고 관객들로서 관객의 경우 경기장에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만일 조직위원회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되면 배상책임보험으로 담보가 되지만 이 경우는 조직위원회가 책임이 있음을 증명하는데 수 주 또는 수 개월이 걸릴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시간적 지연은 조직위원회의 이미지를 위해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므로 입장한 관객에 대해서도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행사취소보험(Cancellation Insurance)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유치 및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연적이며 아울러 스폰서 등 각 이해당사자들과의 계약의 이행이 필수적으로 개막식 전에 대회를 취소하거나 개막식 이후에 대회를 포기 또는 부분적 개최(취소)하거나 기간의 단축, 더 나아가 주요국가의 보이콧 등으로 인하여 대회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조직위원회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데 이를 담보하는 것이 행사취소보험이다.

행사의 취소 원인으로는 전쟁, 행사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급변이나 테러행위,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기후변화 포함) 또는 전염병(조류독감, 구족병, 기타 전염성이 높은 질병 등)의 창궐 등 다양하다. 보상하는 손해는 조직위원회가 입게 되는 수익상실금액으로 통상 조직위원회의 TV중계 권료 수입, 입장료 수입, 스폰서 후원 수입금 등으로 조직위원회가 선택할 수 있다.



라. 재물보험(테러담보 포함)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대회를 위하여 소유·사용·관리하는 경기장, 방송 및 미디어센터, 선수단 숙소 및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 대회기간 중에 화재나 폭발 기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물리적인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 재물보험이다.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재조달가액 기준으로의 보험 가입이 권장되며, 보험조건은 증권상의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전위험담보(All Risks Cover)가 권장된다.

아울러 메인스튜디오나 국제방송센터와 같이 전세계에 파급효과가 큰 보험목적물에 대해서는 테러위험담보를 특별약관으로 추가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별개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테러보험의 경우는 테러행위, 즉 어떤 개인이나 단체의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을 포함하여, 단독으로 행위하던 어떤 조직(들)을 위해서 또는 그와 관련해서 행위하던,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대중을 공포에 몰아넣으려는 의도를 포함한 정치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 목적을 위해 범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담보는 재물손해, 기업휴지, 배상책임으로 구분된다.

마. 건설공사(조립)보험

대규모 국제적 스포츠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기존 경기장이나 시설에 추가하여 새로운 경기장이나 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러한 경기장이나 시설을 건설하는 중에 해당 목적물에 입은 손해나 공사 중에 제3자에게 입힐 가능성이 있는 배상책임에 대하여 담보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건설공사(조립)보험이다.

건설공사보험은 건설 전 기간 즉, 공사를 착공한 시점부터 완공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공사물건 등에 입은 손해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서 배상해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종합보험으로 일반적으로 완성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공사용 재료, 노무비, 가설물 기타 각종 경비가 포함된다.

공사의 경우는 발주자, 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들이 섞여 있으므로 교차배상책임조항(Cross Liability Clause)을 두어 각각의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별개의 배상책임증권에 가입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시설의 증축이나 기존 경기장에 부설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위재산담보(Surrounding Property)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위험관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 범죄보험(Crime Insurance)

대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현금 및 유가증권 등에 대한 임직원의 횡령이나 사기 등으로 인한 손실, 제3자에 의한 도난, 강탈 등을 담보하는 범죄보험(Crime Insurance)의 가입이 요청된다.

정부의 교부금이나 후원사의 후원금, 기타 티켓판매수입 등 막대한 현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직원의 단독 또는 공모에 의한 부정직 행위가 있을 수 있으며, 제3자에 의한 도난이나 강탈의 위험도 상



존한다. 아울러 티켓의 발행과 관련하여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위조모방 발행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조직위원회는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 납치보험(Kidnap & Ransom Insurance)

오늘날과 같은 정치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납치의 위협, 불법억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아시아경기대회와 같은 세계 각국의 주요인사가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행사의 경우에는 선수단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OCA나 조직위원회 기타 각국의 VIP들에 대한 납치나 억류 기타 하이재킹과 같은 위협이 고조될 것이 예상되므로 납치보험의 가입이 요청된다.

납치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은 초기 전문가대응비용, 피해자 사망·후유장해 비용, 치료비, 피해자 사회복귀에 소요되는 비용, 숙진금 및 운송비용, 컨설팅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아. 임원배상책임보험(Directors' & Officers' Liability Insurance)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임원의 경우 대회의 개최와 운영 전반에 걸쳐 복잡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하여 조직위원회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어 이로 인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조직위원회의 전·현직 및 미래임원 등을 담보하는 것이 임원배상책임보험이다.

자. 기타 보험(Miscellaneous Insurance)

대회 운영에 사용되는 자동차(카트 및 기타 운송수단 포함) 등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필요하며, 대회를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항공기나 헬리콥터 등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공보험(Aviation Insurance), 기타 가스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법률상 필요한 보험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2014년 가을, 세계 45개국에서 참석하는 선수단과 임원진, 방문객, 자원봉사자, 미디어 및 방송 관계자,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기타 각국에서 참석할 귀빈 등 수많은 인원이 참석하게 될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대회의 규모 못지않게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얼마 남지 않은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회가 안고 있는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최소화하는 한편, 대규모 스포츠 행사에 따르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최소한의 위험관리 수단으로서의 적절한 보험의 가입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